

의안번호	제 65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3월 3일

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

의안
번호

652

제출연월일 : 2021년 3월 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우리도는 지난 2019년 6월 19일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확정하였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통해 특구 활성화를 위한 강소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함
- 이에 따라, 강소특구 육성을 위한 2021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정부출연금 예산에 대한 도비 매칭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출연목적
 -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,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, 창업 지원 등 2021년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매칭 사업비 출연
- 출연기관 / 출연근거
 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/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
- 출연내역
 - 21년도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비 : 4,800백만원(국비 400, 도 400, 청주시 400)
 - ※ 21년 사업비 국비 15억 증액(25억→40억)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 3억원 증액(5억→8억)필요
(도, 청주시 본예산 2.5억, 1회추경 1.5억 반영으로 각 4억원 지방비 매칭 출연)
- 기대효과
 - 특구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내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은 물론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3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신성장동력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김중호	이형훈	임정빈	8443

기 관 명	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	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 표 : 양성광 ○ 일반현황 - 소 재 지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-5(도룡동 4-27) - 규 모 : 4실 7본부, 직원수 166명 - 주된사업 : 연구개발특구 육성, 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							
출자·출연 사 업 비	○ <u>1회 추경 출연 예정금액 : 150백만원(도비)</u>		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 백만원)							
	구 분	사업 기간	계	21년 기정 예산액	21년 1회 추경액	재원별		
충북청주강소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	'21.3.~ '21.12.	400	250	150	계	국비	도비	시군비
					4,800	4,000	400	400
※국비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직접지원								
출자·출연 필 요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'19.6월)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육성사업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반드시 지원필요 * 강소특구 지정·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(국비 대비 지방비 20%이상 매칭) ○ 기존 12개 특구에서도 매년 육성사업비를 출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출연 필요 							
근거·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(출연 및 보조금) 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							
지도감독 부서인견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'19.6월)에 따라,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으로 특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, ○ 지역경제 발전과 4%경제 및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기여토록 원안대로 의결 건의 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 3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등 기타자료 	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우리 도는 지역 R&D 강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충북연구개발특구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옴
-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정요청서를 제출하여 6월에 충북을 포함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됨
-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는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를 기술사업화 배후공간으로 총 2.2km²의 면적으로 구성되며, 스마트IT 부품·시스템 분야를 특화 육성할 계획
-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 주도형으로 새롭게 도입된 소규모 고밀도 R&D특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강소특구 육성사업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,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의한 협약에 의하여 국비지원액 대비 20%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
 - *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-47호 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고시」 별표6에 의한 협약
- 기존 5개의 연구개발특구(대덕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)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구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출연(30~45억원)해 왔으며, 현재 12개의 강소특구(19년 6개, 20년 6개)에서도 특구 육성을 위해 매년 국비의 20%를 지방비로 출연하고 있음
-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증액에 따른 도비 출연금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

2 출연금 검토

(단위: 백만원)

사 업 명	2020년 결산액	2021년 예산액 (본예산) (C)	2021년 1회 추경 예산안		
			계(B+C)	본예산 반영액(B)	1회 추경 검토액(C)
충북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	600	250	400	250	150

※ 본예산 대비 증가 사유: '21년도 국비 증액(25억원→40억원)에 따른 지방비 매칭

1-2 출연기관 현황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설립근거	법률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			전화번호 : 042-865-8800 홈페이지 : www.innopolis.or.kr			
	주요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05. 9. :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'12. 7. : 특구법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범(명칭변경) '18. 2. : 준정부기관 지정 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정부출연기관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		
인원현황 (21.02.01.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166명		166명		-		
임원 (21.02.01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입기 (법령상 정해진 입기 기재)		
	이사장(당연직)	양○○	○○구청 기획관리실장		2018. 01. 16 ~ 2021. 01. 15		
	이사(당연직)	권○○	(現)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알자리혁신관		2020. 05. 11~		
	이사(당연직)	한○	(現)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		2020. 01. 31~		
	이사	김○○	(現)한국중견과학연구원 바이오분석센터 책임연구원		2020. 07. 03 ~ 2022. 07. 02		
	이사	남○○	(現)계명대학교 교수		2020. 07. 03 ~ 2022. 07. 02		
	이사	이○○	(現)(재)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		2020. 07. 03 ~ 2022. 07. 02		
	이사	신○○	(現)한국피엠오사회적협동조합 이사		2018. 12. 24 ~ 2021. 12. 23		
	이사	이○○	(現)원광대학교 약학대학 교수		2018. 12. 24 ~ 2021. 12. 23		
	감사(비상근)	이○○	(現)(사)혁신경제 감사		2018. 10. 10 ~ 2021. 10. 09		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(특구법 제46조) - 특구내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및 창업의 효율적 지원 -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교류·협력 - 국내·외 투자 유치 및 협력사업 추진 - 특구개발과 관련된 토지, 건물, 시설, 기자재의 취득, 공급 및 임대 						
자본금 (단위: 백만원)	41,263 (20.12월 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 백만원)	157,703(출연) (20.12월 말 기준)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2020	2019	2018	재무현황 (백만원) '20.12.31.기준	자산	55,935
	예산액	166,396	130,333	132,828		부채	13,848
	지자체 지원액 (출연금)	5,830	4,550	3,340		자본 (자산-부채)	42,087
경영성과 (단위: 백만원) '20.12.31.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160,758			161,267		509	

1-③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신성장동력과		출연	400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공공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술창업 및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 필요
-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 혁신 거점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
- 기간 : 2021. 3. ~ 12.
- 출연액 : 400백만원(기정액 250, 1회추경 150)

(단위:천원)

구분	2021년			비고
	계(A+B)	기정(A)	금회추경(B)	
계	4,800,000	3,000,000	1,800,000	국비 증액에 따라 지방비 매칭 (국비25억→40억)
국비	4,000,000	2,500,000	1,500,000	
도비	400,000	250,000	150,000	
시군비	400,000	250,000	150,000	

- 주요내용 : R&D 기술사업화 지원,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등 특구 육성

□ 산출기초

- 강소형 기술 발굴·기획, 강소형 기술이전사업화, 강소형 창업, 지역 특화성장 기업지원 사업 등 추진 ※ 도비 출연금은 지역 특화사업에 활용

□ 기대효과

- 기업 및 연구기관이 집적된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R&D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
- R&D-사업화-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

□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동력 부재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발생 및 협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구 해지 등 불이익 발생 우려

붙임1 2021년 충북청주강소연구특구 사업 추진계획

1 기술발굴 및 연계 (사업비 : 620백만원)

□ 목 적

- 우수 공공기술 발굴 및 마케팅, 외부 수요발굴 및 매칭, 유관기관 네트워킹 활동 등을 통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(연구소기업) 활성화

□ 추진방향

- 충북대학교, 주변 혁신기관, 강소특구 육성 협의체를 통해 수요기반 기술 발굴 및 전·후방 산업을 연계하여 기술이전 성과 창출

□ 사업내용

- ① (양방향 기술발굴 연계) 충청권 기술사업화 거점 플랫폼 운영을 통한 공급 기반 기술발굴 및 최종 제품 수요기반 전·후방산업 연계 기술발굴
- ② (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) 연구소기업의 용도별 기술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소기업의 설립·육성 지원

□ 소요 예산

(단위 백만원)

사업명	예산	주요 내역
1. 기술발굴 및 연계	620	
1-1. 양방향 기술발굴 및 연계	6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술발굴 및 연계 600 - (연구소기업 발굴 및 기술이전) 250 X 2개(간접) - (충청권 기술사업화 거점센터 연계 사업) 100 X 1개(직접)
1-2.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술가치평가 지원 20

2**기술이전 사업화 (사업비 : 1,630백만원)****□ 목적**

- 강소특구 공공연구기관·대학 등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

□ 추진방향

- 충북청주 강소특구 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기술사업화 계획을 수립한 기업 및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R&BD 과제 지원

□ 주요내용

-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연구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R&BD(제품화·양산화) 과제 지원
- 기술적 타당성 검증, 시험·분석·평가, 기술패키징, 시제품 개발, 국내외 표준·인증, 양산기술 개발,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

□ 지원대상

- 강소특구 내 공공연구기관·대학의 기술을 이전·출자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또는 기업·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 등

□ 추진방식

- 강소특구별로 지원대상 발굴 → 과학기술정보통신부(특구재단)이 통합 공고, 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지원대상 선정

□ 소요 예산

(단위 백만원)

사업명	예산	주요 내역
2-1. 기술이전사업화	1,630	· 신규과제 : 200백만원 내외 X 6개 과제 · 후속고도화 : 200백만원 내외 X 3개 과제 - 특구관련 기업 R&BD과제 직접지원

※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내에서 사업 수요 등을 고려, 전문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예산 운영

3**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(사업비 : 700백만원)**□ **목 적**

-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창업 촉진과 유관기관 연계 투자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업 활성화

□ **추진방향**

- 창업기술 실증 지원을 통한 유망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
- 청주 강소특구 내 창업 활성화 및 초기창업 투자 활성화

□ **사업내용**

- ① (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) 대학 기술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 창업자 후보군 발굴, 창업아이템 검증, 창업 후 후속지원 연계하여 창업 활성화
 - ② (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)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초기투자·멘토링·데모데이 등의 후속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 추진
- ※ 창업기업 연계지원에 집중하되, 충북 청주 강소특구 대내·외 자금지원 인프라 활용

□ **소요 예산**

(단위 백만원)

사업명	예산	주요 내역
3.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	700	
3-1.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	5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노폴리스캠퍼스 500 * 창업 아이템 검증, 공백기술 매칭, 아이템 사업화 실증지원, Track형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데모데이 운영
3-2.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	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엑셀러레이팅 200 * 창업자 발굴, 스타트업 보육,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

4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(사업비 : 1,770백만원)

□ 목 적

- 강소특구 혁신 주체 간 혁신네트워크 구성·운영을 통하여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
- 스마트 IT 부품/시스템 분야 R&BD 환경 고도화를 통한 기업성장 지원

□ 추진방향

-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네트워크 활동, 특화기업 성장지원, 해외진출 지원, 미래기술 융합 제품혁신 등 다양한 특화 활동 전개

□ 사업내용

- ① (혁신네트워크 육성) 충북 청주 강소특구 혁신주체(강소특구육성 협의체*) 및 스마트 IT 특화 혁신네트워크 운영*으로 네트워크 운영 및 연계·협력 성과 창출

* 산·학·연·관 혁신주체 (창업기업, 특화기업, 지원기관, 기술·금융전문가 등)

* 혁신주체들이 청주 강소특구 인근에 밀집되어 상호 협력 여건도 우수

- ② (지역 특성화 육성)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의 시제품 지원 및 기술 개선을 지원하고, 사업화 기술에 대한 시험분석 및 인증 등을 지원
특화분야의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“선택과 집중”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

▶(미래기술융합제품혁신 지원) 특화분야 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제품 혁신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

▶(특화기업 성장 패키지 지원) 연구소기업 희망 기업 등 강소특구 내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컨설팅, 시험, 인증, 분석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기업 성장 패키지 지원

▶(BIZ-Packaging 프로그램 운영) BIZ-Research¹⁾, BIZ-IUM²⁾, BIZ-Letter³⁾, BIZ-Shuttle⁴⁾ 운영을 통한 최종 수요기반의 기술 상용화 지원

- *1) BIZ-Research : 이전 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을 조사, 수요기반 연계형 지원
- *2) BIZ-IUM : 산학연 소모임을 통한 '분야별 밀착 기술수요 발굴'을 협력 관계 구축
- *3) BIZ-Letter : 정기적 기술정보 및 특구 사업 소개 등을 통한 지속적 상생협력 유지
- *4) BIZ-Shuttle : 정기적인 특구 내 기업 방문을 통한 '찾아가는 기술 사업화' 추진

▶(관로개척 역량 강화 지원)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및 국내 대기업, 관공서 및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자료 및 마케팅 지원

③ (특화기업 해외진출 지원) 강소특구별 美, 中, EU, 동남아 등 글로벌 주요 시장 진출을 타겟으로 해외 수요가 발굴되면, 해외 비즈니스 매칭 등 해외진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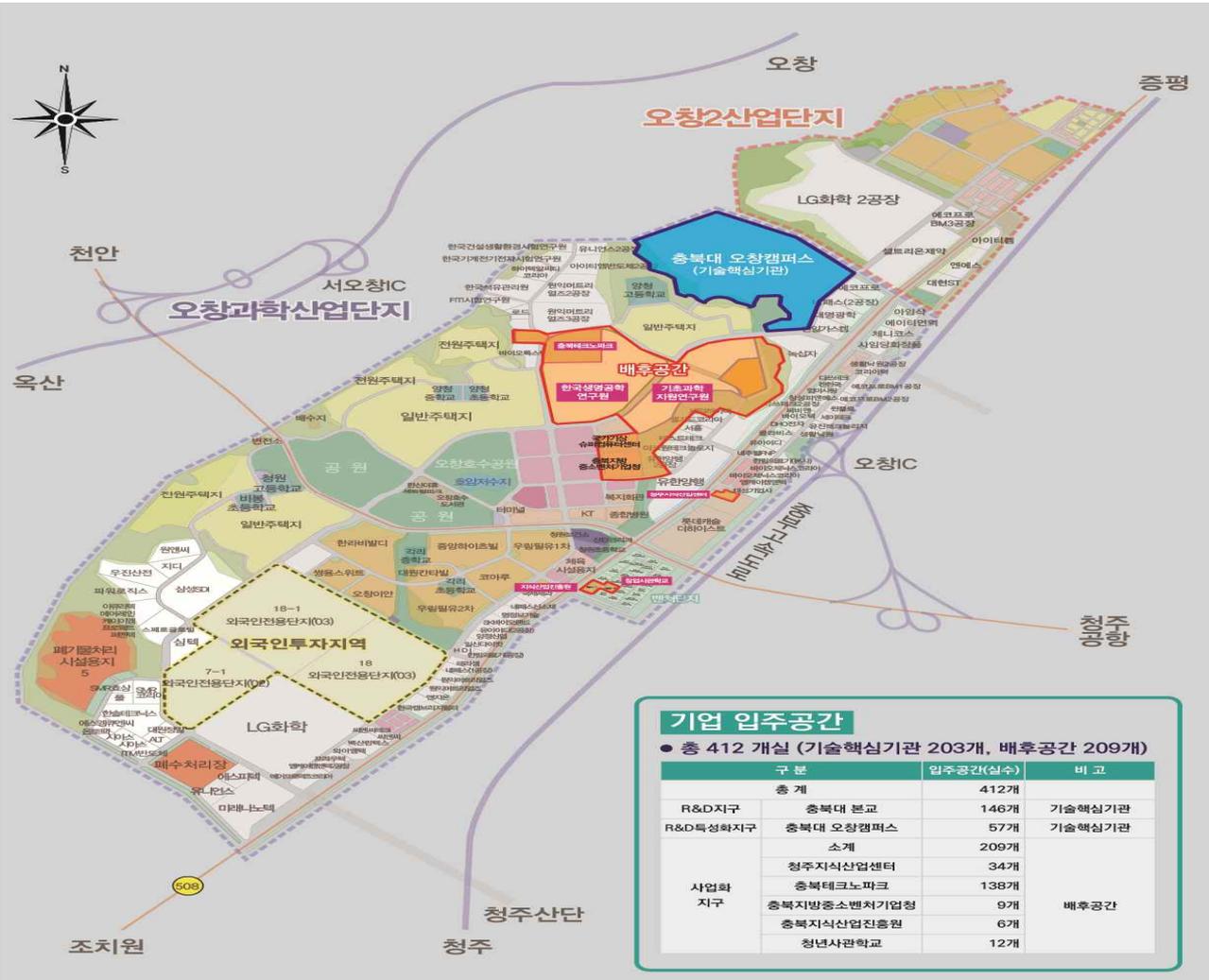
□ 소요 예산

(단위 백만원)

사업명		예산	주요 내역
4. 강소특구 특화성장지원		1,770	
4-1. 혁신네트워크 육성		4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혁신네트워크 육성 400 - 전담인력 인건비 250 - 회의, 행사 및 세미나 개최비 100 - 전문가 활용비 및 기타 운영비 50
4-2. 지역 특성화 육성	4-2-가. 미래기술융합혁신제품 사업화 지원	7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기술 융합 제품 혁신 지원(지방비) ... 720 - (기술핵심기관 공모형 혁신지원) 6건 x 60백만원 - (외부공공연구기관 자유형 혁신지원) 6건 x 60백만원
	4-2-나. 특화기업 성장패키지 지원	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특화 성장패키지 지원 200 - (지역특화기업 성장지원) 9건 x 20백만원
	4-2-다. 비즈 패키징 프로그램 운영	1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구 비즈 패키징 프로그램 운영 100 - BIZ-Research, BIZ-IUM, BIZ-Letter, BIZ-Shuttle 운영을 통한 최종 수요기반의 기술 상용화 지원 • 특구 기업 DB 구축 50 - 지역 기업지원기관 연계형 지원 강화
	4-2. 라 관로개척 역량강화 지원	2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INNO-BIG 지원 사업 150 - (글로벌 수출역량 강화지원 사업) 5건 x 30백만원 • IUM 지원 사업 100 - (온라인 플랫폼 대상 기업지원) 10건 x 10백만원
4-3. 특화기업 해외진출지원		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화기업 해외진출 지원 50

붙임2

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위치도 및 배후공간



강소특구 지정·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서

○ 협 약 명 : 충북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·육성 협력

○ 협약기간 : 지정 고시일 ~ 지정해제 고시일

○ 협약당사자

(가) 충청북도지사 이 시 중

(나) 청주시장 한 범 덕

(다) 충북대학교 총장 김 수 갑

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강소특구를 지정하고, 육성·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(가)와 (나)와 (다)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협약의 목적) 본 협약은 강소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,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의 내용) ① 본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별첨의 “충북강소특구 지정 요청서”로 한다.

② 제1항의 내용이 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」 제11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될 경우 그에 따른다.

제3조(신의성실) ① (가)와 (나)와 (다)는 충북강소특구의 지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협약 및 관련 법령(규정)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(가)와 (나)와 (다)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협약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참여인력, 현장 확인, 관계서류 열람, 통계자료 조사, 평가 이행 등의 정보 수집·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·협력하여야 한다.



제4조(책임과 역할) ① (가)와 (나)와 (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
1. 강소특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·운영
2. 공공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
3. 혁신생태계 구축 및 강소특구 육성을 위한 재원 분담
 - 가. 연구개발특구육성(R&D) 예산의 국비 총액 대비 지방비 20% 이상
 - 나. 특구 기술금융 조성·운영 동참
 - 다. 연구개발특구육성(비R&D) 예산의 국비 총액 대비 지방비 50% 이상

② (가)와 (나)와 (다)는 강소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세제혜택(취득세, 재산세 등 지방세 지원)
2. 강소특구 활성화와 연관되고 시행의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한 규제 개선(입지, 토지, 인력, 기술, 실증화, 사업화 등)
3. 산·학·연·관 협력 활동의 활성화 보조
(기술사업화 상담 인력·조직 지원 및 공유 등)
4. 신규 인프라 구축 등의 기반 및 관리 협조
(국·공유 재산 사용·수익·대부·매각, 부지매입비 지원 등)
5. 강소특구의 개발 및 관리 관련 사항
(인·허가 의제처리, 사업시행자 유치 등)
6. 강소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

③ (가)와 (나)와 (다)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획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.

④ (가)와 (나)와 (다)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“충북강소특구 지정 요청서”의 강소특구 지정계획 및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
제5조(협약의 변경) (가)와 (나)와 (다)는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약의 해약) (가)와 (나)와 (다)는 강소특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일방이 중대한 협약 위반을 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 다만,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7조(권리·의무의 양도금지) (가)와 (나)와 (다)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, 위임, 하도급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기타) ① (가)와 (나)와 (다)는 본 협약서에 따라 사업을 기획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의 내용과 이에 관한 사업비의 지급, 관리 및 사용, 사용실적 보고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.

제9조(해석) ① (가)와 (나)와 (다)는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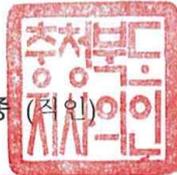
③ 본 협약서는 (가)와 (나)와 (다)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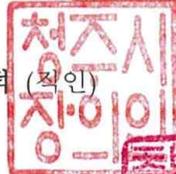
2018년 7월 7일



(가)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(직인)



(나) 청주시장 한범덕 (직인)



(다) 충북대학교 총장 김수갑 (직인)



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(약칭: 연구개발특구법)

[시행 2019. 4. 1.] [법률 제16172호, 2018. 12. 31., 타법개정]

제12조(특구육성사업의 추진)

-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(이하 "특구육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하고,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·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,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,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8조(자금의 조달)

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.

- 1.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- 2.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
- 3. 차입금(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- 4. 수익사업의 수익금
- 5. 그 밖의 수입금

제58조의2(출연 및 보조금)

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*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***제48조(사업)**

- 1. 특구의 개발 및 관리·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
- 2.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- 3.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
- 4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
- 5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

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-47호

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」를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8. 7. 24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<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>

제2장 강소특구 지정원칙

제9조(협약) ① 시행령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약 목적 및 기간
2. 협약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
3. **협약 당사자의 자원분담 계획 및 목표**
4. 협약 사항에 따른 성실 수행 의무
5.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정·육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당사자인 시·도지사 및 기술 핵심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협약서 양식은 별표 6과 같으며, 협약서에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합의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나, 양식에서 이미 명시된 사항을 제외할 수는 없다. 다만, 협약서 양식에 명시된 사항의 규모, 수준 등을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. <별표6> 강소특구 지정·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서